●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441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20. 4. 3.

다. 회 부 일 : 2020. 4. 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 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ㅇ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 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 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 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의 개정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임.
- 0 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은 같음.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Rightarrow$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관련 사항 삭제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

<sup>1) 「</sup>지방자치법」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u>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u>거나 협의회를 없애<u>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u>

<sup>「</sup>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 2 주요사항 검토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이하 "협의회"라 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목적(규약안 제1조)"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2015년 9월에 구성(최초 2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현재는(2020년 2월기준) 8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 명칭:「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구성일 : 2015. 9. 14.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우수사례 상 호 교환 등
- 연회비: 5,000천원
- 가입일: 2016. 5. 3.
- 가입현황('20.2월기준) : 서울특별시 및 22개 자치구 등(미가입 자치구 : 중랑구, 동작구, 서초구)등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

#### □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협의회의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152조제2항²)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므로, 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개정 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제출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 규약 개정의 주요내용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등(악 제1조 등)
  -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아 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 부협의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3)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구성 조항을 인용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 법」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 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 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sup>2)</sup> 각주 1 참조

<sup>3)</sup> 각주 1 참조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를-----

- 공동사무국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 규약 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협의회장의 지자체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동 행정협의회가 구성될 당시협의회의 구성주체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두고 있고 협의회 가입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가입 지자체가 2015년 9월 27개에서 85개(2020년 2월기준)로 늘어나 협의회 운영예산도 함께 증가한 바, 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업무분장의 개선의 필요성과 협의회로만 단독 사무국을 운영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원 및 조직) ④협의회 제반업 무를 처라하기 위하여 <u>협의회장 지자체</u> 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4조(임원 및 조직) 제4항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협의회장</u>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 협의회 부담금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3조)

-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2018)4)에 따라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부담금 관리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회계연	제13조(회계 및 결산)① ~ ③ (생
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략)
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	
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	
한다.	
<신설>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sup>4)</sup> 국민권익위원회(2018.8),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 3 종합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동 으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행정협의회 규약의 개정 사항을 담은 것으로, 협의회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변 화에 따른 사무조직을 개선하며,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 다만「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시 의회의 동의절 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협의회의 규약이 2015. 9.14 일 최초 제정 이후 금번 동의안을 포함하여 3번의 개정5)이 이루 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 는 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sup>5) (1</sup>차 개정) 2017.11. 3일, (2차 개정) 2018. 9.13일, (3차 개정) 2019. 9.24일

# 〈참고자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 및 2018년 개정 규약 동의안 시의회 미제출 사유서

#### 1. 사유서 대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7.11. 3.개정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9.13.개정

#### 2. 추진경과

- <u>서울시는 2016. 5. 3.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u>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 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시의회에 제출(의안번호 1566호, '16.12.2) 하고. 의결을 거쳐 고시함
- 개정규약(2017.11. 3.) : 회장 지자체 오산시, 개정안 의회 미제출
- 개정규약(2018. 9.13.) : 회장 지자체 오산시, 개정안 의회 미제출
- **2019**. **9.24**. **개정규약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전국 지자체)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2019. 9.24.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 안내(도봉구 교육지원과-16948호, '19.11.13)** 
    - $\Rightarrow$   $^{\prime}20년 5월 임시총회전까지 절차 완료 협조$
  - <u>서울시는 2020. 4. 3.</u>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 회 개정('19.9.24) 규약안'을 금번 시의회 동의 안건으로 제출(의안번호 1441호)함

#### 3. 미제출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이 미비 하였고, '15년에 출범하여 1년마다 회장 지자체 및 사무국이 교체되면서 의결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음
- 금번 개정('19.9.24) 규약안에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지방자치법 제152조)을 삽입하여 추진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향후 규약 개정 시에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4. 담당자(개정안 미제출당시)

구 분	주무관(업무기간)	팀 장	과 장	회장 지자체
규약 2017.11. 3.개정	안○○	김○○	김○○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김○○ 주무관
규약 2018. 9.13.개정	('16.5.1.~'18.10.31)	마○○	김○○	(\$\text{8}\text{031-8036-****})